

제 호			
타이어		[] 제작 [] 판매 [] 수입 [] 사용	금지명령서
수명인 (受命人)	상호		
	대표자		
	주소 (전화번호:)		
	사업장 주소 (전화번호:)		
대상 타이어	제작사	타이어 생산공장	타이어 종류
	모델·패턴명	규격(제원번호)	
	고유코드		
명령내용	☐ 귀하는 년 월 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정명령 제 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, 대상 타이어에 대하여 제작[], 수입[], 판매[], 사용[]의 금지를 명합니다.		
	☐ 귀하는 년 월 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정명령 제 호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, 대상 타이어에 대하여 제작[], 수입[], 판매[], 사용[]의 금지를 명합니다.		
	소음도 측정일시	년 월 일	
	소음도 측정장소		
	소음도 측정결과	※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dB(A) dB(A)	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타이어의 제작[], 수입[], 판매[], 사용[]의 금지를 명령합니다.			
년 월 일			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		직인	